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Contents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 I.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II. 전형일정
- III. 전형방법
- IV. 전형구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1.담임목사추천자전형
 - 2.일반학생전형
 - 3.교역자추천전형
 - 4.자기추천자전형
 - 5.만학도전형
 - 6.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7.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
 - 8.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 9.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정원외)
- V. 학과 전형료

서울장신대학교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전형유형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비고
학생부 위주(교과)	담당목사추천자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45	정원내 모집
학생부 위주(교과)	만학도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2	
학생부 위주(교과)	일반학생	사회복지학과	20	
학생부 위주(교과)	교역자추천자	사회복지학과	8	
학생부 위주(교과)	자기추천자	사회복지학과	4	
실기 위주	일반학생	교회음악과(성악, 피아노, 오르간)	17	
계			96	
학생부 위주(교과)	농.어촌학생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1	정원외 모집
		사회복지학과	2	
실기 위주	농.어촌학생	교회음악과(성악, 피아노, 오르간)	1	
학생부 위주(교과)	특성화(전문계)고 교출신자	사회복지학과	1	
학생부 위주(교과)	특수교육대상자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1	
		사회복지학과	4	
실기 위주	특수교육대상자	교회음악과(성악, 피아노, 오르간)	1	
계			11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학과	모집인원	지원유형	비고	
신학과	1	교포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정원외 모집
사회복지학과	1			
신학과	비제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 수시모집 미등록충원등록 마감 이후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 추가하여 선발함.(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제외)

※ 수시모집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교회음악과는 전공 전체 성적순으로 선발함.

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원서접수	인터넷	2021.09.10(금)10:00부터~09.14(화)18:00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접속 www.uwayapply.com
	방문 및 우편	2021.09.14(화)(10:00~17:00)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2021.09.10(금)10:00부터~09.14(화)17:00까지	본 대학교 접수장소: 벨엘관1층 종합행정실 교무처(입시) *우편접수(등기)는 2021.09.14(화)17:00 도착분에 한함.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함.
인터넷 원서접수자 첨부서류제출마감		2021.09.29(수)17:00까지	(12749)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서울장신대학교 교무처(입시)
전형일(면접/실기)		2021.10.16(토)10:00	본 대학교 고사장
합격자 발표일		2021.10.27(수)14:00	본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js.ac.kr)
등록일		1차 예치금납부: 2021.12.17(금)~20(월) 16:00 까지 2차 잔여등록금납부: 2021.01.24(월)~01.27(목) 16:00까지	등록금은 개인별로 발급된 가상계좌(입금전용)로 입금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21.12.27(월)	개별통보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21.12.28(화)	등록금은 개인별로 발급된 가상계좌(입금전용)로 입금

* 예치금 미등록자는 불합격처리되니 기간엄수하여 반드시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III. 전형방법

1. 성적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명	학과	전형요소별반영비율(%)			최고점	최저점	면접실시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실기	면접			
담임목사추천자	신학과	60		40	1,000	0	○
만학도	신학과	60		40	1,000	0	○
일반학생	사회복지학과	80		20	1,000	0	○
교역자추천자	사회복지학과	60		40	1,000	0	○
자기추천자	사회복지학과	60		40	1,000	0	○
일반학생	교회음악과		100		1,000	0	
농·어촌학생	신학과	100			1,000	0	
	사회복지학과	100			1,000	0	
	교회음악과		100		1,000	0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사회복지학과	100			1,000	0	
특수교육대상자	신학과	60		40	1,000	0	○
	사회복지학과	60		40	1,000	0	○
	교회음악과		100		1,000	0	
재외국민과외국인	신학과			100	1,000	0	○
	사회복지학과			100	1,000	0	○
	교회음악과		100		1,000	0	

2.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 방법

- ① 2017년 2월 졸업자~2022년 졸업예정자(나이스 제공자만)
교과 과목중 국어와 영어는 전과목을, 사회교과(역사와 도덕 포함)에서는 우수한 2과목의 석차등급을 평가기준표에 적용하여 반영한다.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
단, 학년별 교과가 없을 경우는 제외되며 교과가 개설된 과목만으로 산정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석차등급이 표시된 과목만 반영한다.
- ② 2017년 이전 졸업자 중 석차등급이 있는 자는 마지막 학기의 석차등급을 합산한 후 평균하여 적용하고, 과목별 등급이 없는 자는 마지막 학기의 계열석차를 평균하여 등급 평가기준표에 적용하여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석차등급이 표시된 과목 및 계열 석차가 있는 과목만 반영한다.
- ③ 1997년 이전 졸업자(중생부)
전학년 전체 교과목 계열석차 백분율(9등급)로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체 교과목 계열석차가 없을 경우는 3학년 1학기 학급석차를 반영한다. 3학년 1학기 학급석차가 없을 경우는 2학년 2학기 학급석차를, 2학년 2학기 학급석차가 없을 경우는 2학년 1학기 학급석차를 반영한다.
- ④ 검정고시 출신자
전체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⑤ 외국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전체 이수 교과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교과성적 평가기준표

계열석차백분율(%)	등급	60%	80%	100%
0~11	1	600	800	1000
11.01~22	2	525	700	875
22.01~33	3	450	600	750
33.01~44	4	375	500	625
44.01~55	5	300	400	500
55.01~66	6	225	300	375
66.01~77	7	150	200	250
77.01~88	8	75	100	125
88.01~100	9	0	0	0

◆ 검정고시출신자 취득점수 평가기준표

검정고시합격자 (취득점수의 평균점수)	등급	60%	80%	100%
98.40~100	1	600	800	1000
95.60~98.39	2	525	700	875
90.80~95.59	3	450	600	750
84.00~90.79	4	375	500	625
76.00~83.99	5	300	400	500
69.20~75.99	6	225	300	375
64.40~69.19	7	150	200	250
61.60~64.39	8	75	100	125
60.00~61.59	9	0	0	0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의 성적 반영방법

외국 고등학교 성취도	등급	60(%)	80(%)	100%
A+	95~100	600	800	1000
A, A-	90~94	525	700	875
B+	85~89	450	600	750
B, B-	80~84	375	500	625
C+	75~80	300	400	500
C, C-	70~74	225	300	375
D+	65~70	150	200	250
D, D-	60~64	75	100	125
E 이하	59이하	0	0	0

3. 교회음악과 실기고사(어느 한 곡이라도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전공분야	실기고사 내용	비고
성악	1. 이태리가곡 2. 독일가곡 3. 성가곡(번안곡 포함 모든 언어 가능) 4. 오페라 아리아 *위 항목 중 중복을 피하여 2곡	반주자 동반
피아노	1. Etüde 1곡 2. Etüde를 제외한 자유곡 1곡	
오르간	1. 피아노 Sonata 빠른악장 1곡 또는 Etüde중 1곡 2. 자유곡 1곡(피아노곡 또는 오르간곡)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해야함.

4. 면접(필수) *불참시 불합격처리됨

학과	면접
신학과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면접하며 면접결과는 점수에 반영되어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사용된다.
사회복지학과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면접하며 면접결과는 점수에 반영되어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사용된다.

*면접점수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됨

IV. 전형구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담임목사추천자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담임목사 추천자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45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담임목사추천서(본교서식) ④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⑤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인터넷접수자는 제출 하지 않음	면접실시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담임목사추천서(본교서식)를 받은 자.

2. 일반학생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일반학생	사회복지학과	20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제출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 제 출하지 않음	면접실시
	교회음악과 (성악, 피아노, 오르간)	17		실기고사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교역자추천자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교역자추천자	사회복지학과	8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④교역자추천서(본교서식) ⑤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 제 출하지 않음	면접실시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교역자추천서(본교서식)를 받은 자.

4. 자기추천자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자기추천자	사회복지학과	4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제출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 제 출하지 않음	면접실시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또는 장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 자.

5. 만학도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만학도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2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제출 ④주민등록등본 ⑤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제출 하지 않음	면접실시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2022년 3월 1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자(1987년 2월말 이전 출생자)

6. 농.어촌학생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농.어촌학생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1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중.고등학교) ③지원자격확인서(본교서식)	실기고사
	사회복지학과	2	④농.어촌학교 재학사실확인서(본교서식) ⑤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⑥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⑦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제출하지 않음	
	교회음악과 (성악, 피아노, 오르간)	1	⑧부와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⑨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제출하지 않음	

2) 지원자격

- (1)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과정(6년)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3)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7.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계열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특성화(전문계) 고교출신자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1	①입학원서 ②학교생활기록부 ③전문교과이수확인서(본교서식)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2) 지원자격

- (1)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자.
- (2)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명 지정표<<

모집단위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계열
사회복지학과	경영정보(학)과	상업계열

정보처리과	상업계열
회계정보과	상업계열

8.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1) 모집학과 및 제출서류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제출서류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신학과 (목회신학, 예배찬양사역, 초등대안교육, 자연치유)	1	① 입학원서 ② 학교생활기록부 ③ 장애인증명서	면접실시
	사회복지학과	4	④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제출	
	교회음악과 (성악, 피아노, 오르간)	1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교서식) /인터넷접수자는제출하지 않음	실기고사

2) 지원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9.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1) 모집구분

모집인원	법령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1. 영주교포자녀 2. 해외근무자의 자녀 2-1.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2-2.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4. 외국인 4-1.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2.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5. 북한이탈주민

* 유의사항

- ▶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서류접수처에서 원본 대조
필하여 제출함.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만 인정)
- ▶ 초·중·고 교육과정 중 국내과정은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 외국인이 국내거주인인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 ▶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2022.02.28 까지 교무처(입시)로 제출해야 함.
- ▶ 입국 허가 비자발급에 관하여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함.**

2) 전형방법

구분	학과	전형방법	모집인원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신학과	면접 100%	1
	사회복지학과	면접 100%	1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신학과	면접 100%	비제한
	사회복지학과	면접 100%	
	교회음악과	실기 100%	

1-1. 재외국민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3/4이 상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해외근무자 (공무원,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 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학생이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3/4이 상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3/4이 상	3년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3년	학생 해외재 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 다 2/3이 상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재학기간의 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 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을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영주교포 자녀의 범위

- 부·모·학생 모두가 해당국의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모 모두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이 학생과 동일해야 함. 즉 특별전형 자격 인정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3년)동안 반드시 부모와 함께 영주교포로서 거주해야 함.

▶ 해외근무자의 범위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①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비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 재학기간의 기준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 임시 체류 경우도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 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해당국에서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지원 자격요건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재학인정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외국인학교 포함)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2-3. 북한이탈주민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통일부 확인	-	-	-	-	-	

- ▶ 기본 학력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 ▶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또한, 각 시도교육감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영주교포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⑪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⑫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상사직위,외국정부. 국제기구의 자녀 -유치과학자및교수요원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⑪ 주민등록말소등본 혹은 호(제)적 등본 ⑫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⑦ 신분증 사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⑥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⑧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⑨ 재정보증서류 가.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나.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⑩ 한국어능력(TOPIK) 성적증명서(4급 이상)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⑥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⑧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⑨ 재정보증서류 가.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나.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⑩ 한국어능력(TOPIK) 성적증명서(4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수시 사정원칙 및 방법

- 1) 수시 입학사정은 전형유형별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총점 성적순으로 사정한다.
- 2) 동점자 처리기준
 - ▶ 학생부 위주 기준: 국어교과 - 영어교과 - 사회교과 우선
 - ▶ 실기/실적 위주 기준
 - 1순위: 심사위원 5명의 점수 중에서 최고, 최저 점수 버리고, 반영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심사위원 5명의 점수 중에서 최고, 최저 점수 버리고, 반영 점수 중 최저 점수가 높은 자
- 3) 응시자격,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등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4)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입학지원자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할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5)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하며, 합격자에 대하여는 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6) 해당전형의 면접에 참석하여야 하고, 면접은 학생으로서의 자질과 인성, 품성, 적성을 면접하며 면접 결과는 점수에 반영되어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사용된다. 면접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7) 입시 지원서류 중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된다.
- 8) 기타사항은 본교 내규에 따른다.

V. 학과 전형료

학과	전형료
신학과	45,000원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72,000원

* 농어촌학생전형, 전문계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구분	전형명	학과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학생부등급 (평균)
정원내	담임목사추천자	신학과	50	56	1.12	5.71
	만학도	신학과	2	4	2.00	9
	일반학생	사회복지학과	20	45	2.25	5.43
	교역자추천자	사회복지학과	8	13	1.63	5.81
	자기추천자	사회복지학과	6	10	1.67	6.14
	일반학생	교회음악과	17	27	1.59	-
정원외	농.어촌학생	신학과	1	1	1.00	-
		사회복지학과	2	4	2.00	7.31
		교회음악과	1	-	-	-
	특성화(전문계)고교졸신자	사회복지학과	1	1	1.00	7.64
	특수교육대상자	신학과	1	1	1.00	-
		사회복지학과	4	7	1.75	8.2
		교회음악과	1	1	1.00	-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학과	1	-	-	-
사회복지학과		1	-	-	-	
계			115	170		

// 주요사항

1. 전형료 환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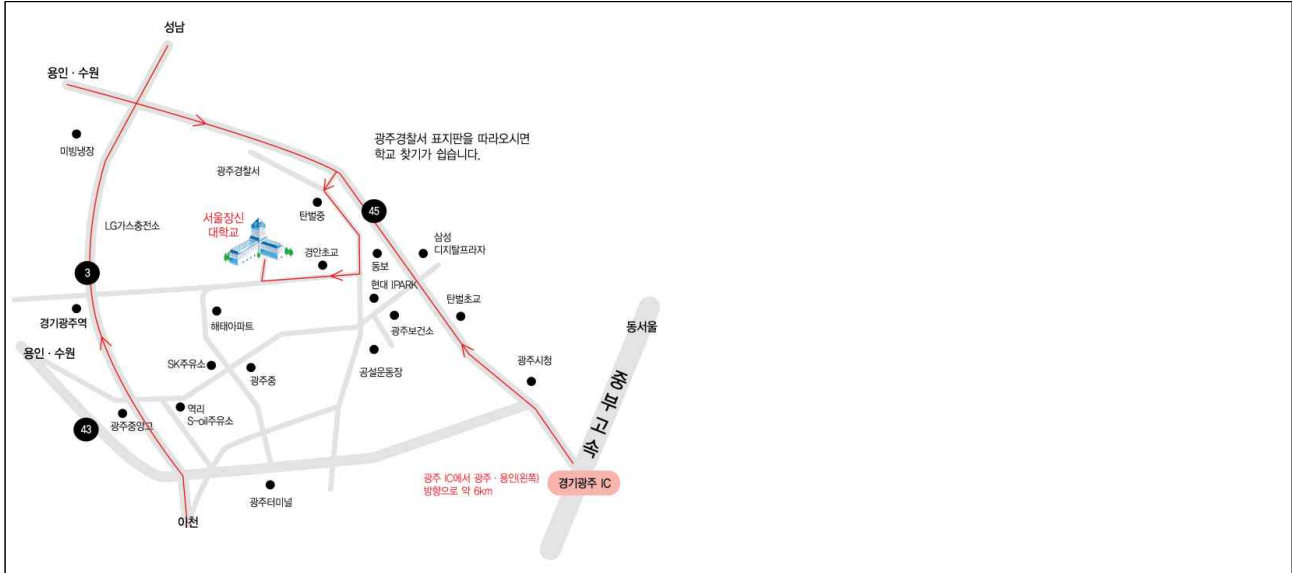
-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및 고등교육법제42조의3제2항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다.
- 3) 전형료 환불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금 환불 안내

- 1) 합격자가 등록 후 입시일자가 다른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이중 합격하여 이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합격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서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2) 등록금 환불 절차
 - 등록포기원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팩스) → 교무처에서 서류 확인 → 총무처에 접수 후 환불(온라인 입금)처리(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팩스번호 : 031-765-1232
 - 수험생 첨부서류: ①등록포기원(본교 양식) ②신분증사본 ③통장사본 ④타대학합격증사본(타대학합격자에한함)
3. 시험기간 중 연락처 및 보호자 주소 기재란에는 우편번호, 번지, 통반, 전화번호를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한다.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4. 합격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전적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의 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 후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5. 국외졸업 지원자는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고사당일 수험생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간을 준수하여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7. 수험생은 고사기간 중에는 수험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수험표를 분실 하였을 때는 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준비하여 입시홍보실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8.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미등록으로 인한 여석은 예비후보자 또는 추가모집을 통하여 충원하므로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입시지원서류 중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처리 된다.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내규에 따른다.

서울장신대학교 오시는 길

■ 찾아오시는 길



■ 버스번호 및 주요 경유지 안내

출발 지역	버스번호	주요 경유지	기점	중점	비고
서울 지역	(좌석) 1113	테크노마트앞.강변역 → 천호역6번출구 → 강동역 → 광주터미널 or 경기광주역 하차	테크노마트앞.강변역	에버랜드	
	(좌석) 1113-1	테크노마트앞.강변역 → 천호역6번출구 → 강동역 → 광주터미널 하차	테크노마트앞.강변역	동원대학교	
	(좌석) 1113-2	테크노마트앞.강변역 → 천호역6번출구 → 강동역 → 광주보건소 하차	테크노마트앞.강변역	광주터미널	
경기 지역	(좌석) 114	이천터미널 → 동원대학교 → 곤지암터미널 → 초월역 → 광주터미널 하차	이천터미널	광주	
	(시내) 60	수원역.AK플라자 → 화서문 → 광고마을 → 성북역 → 수지구청 → 오리역 → 경기광주역 하차	수원	광주	
	(시내) 660	상현중학교 → 수지구청 → 죽전역 → 단국대학교 → 오포읍사무소 → 경기광주역 하차	광고	광주터미널	
	(시내) 3-1	신흥역 → 모란역 → 삼동역육교 → 광주보건소 하차	성남	광주	
	(시내) 300	오리역 → 정자역 → 야탑역 → 삼동역육교 → 광주동보아파트 하차	성남	곤지암	
	(시내) 20	용인터미널 → 둔전역 → 포곡고등학교 → 외대사거리 → 경기광주역 하차	용인	광주	
경기광주 지역	(마을) 2	경안중학교 → 경기광주역 → 광주중앙고등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보건소 → 광주시청 → 보현사입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회덕동 전원마을	

■ 고속도로 이용시

- 중부고속도로 - 경안I.C(광주) - 광주방향(45번국도)진입 - 광주경찰서 입구 좌회전 - 서울장신대학교
- 경부고속도로 - 구리, 판교방향진입 - 성남(3번국도상) - 광주경찰서방향진입(45번국도) - 광주경찰서 입구 우회전 - 서울장신대학교

■ 지하철 이용시

- 경강선 → 경기광주역 하차 → 2번 출구 → 마을버스 2번 혹은 택시(기본요금) → 서울장신대학교

■ 교통망

- 분당 ~ 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판교~이매~광주(서울장신대)~이천~여주)
 - 신분당선/분당선 환승가능 ○ 강남/잠실 진입 20~30분대
- 성남 ~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 시속100KM, 6차선 ○ 분당~내곡간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 20분대 강남진입
 -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용이, 분당~청담대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용이
- 고속도로 인접 교통망
 - 광주~여주~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인접
 - 청주~안성~이천~광주~하남을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 인접
 - 인천~안양~성남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접